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24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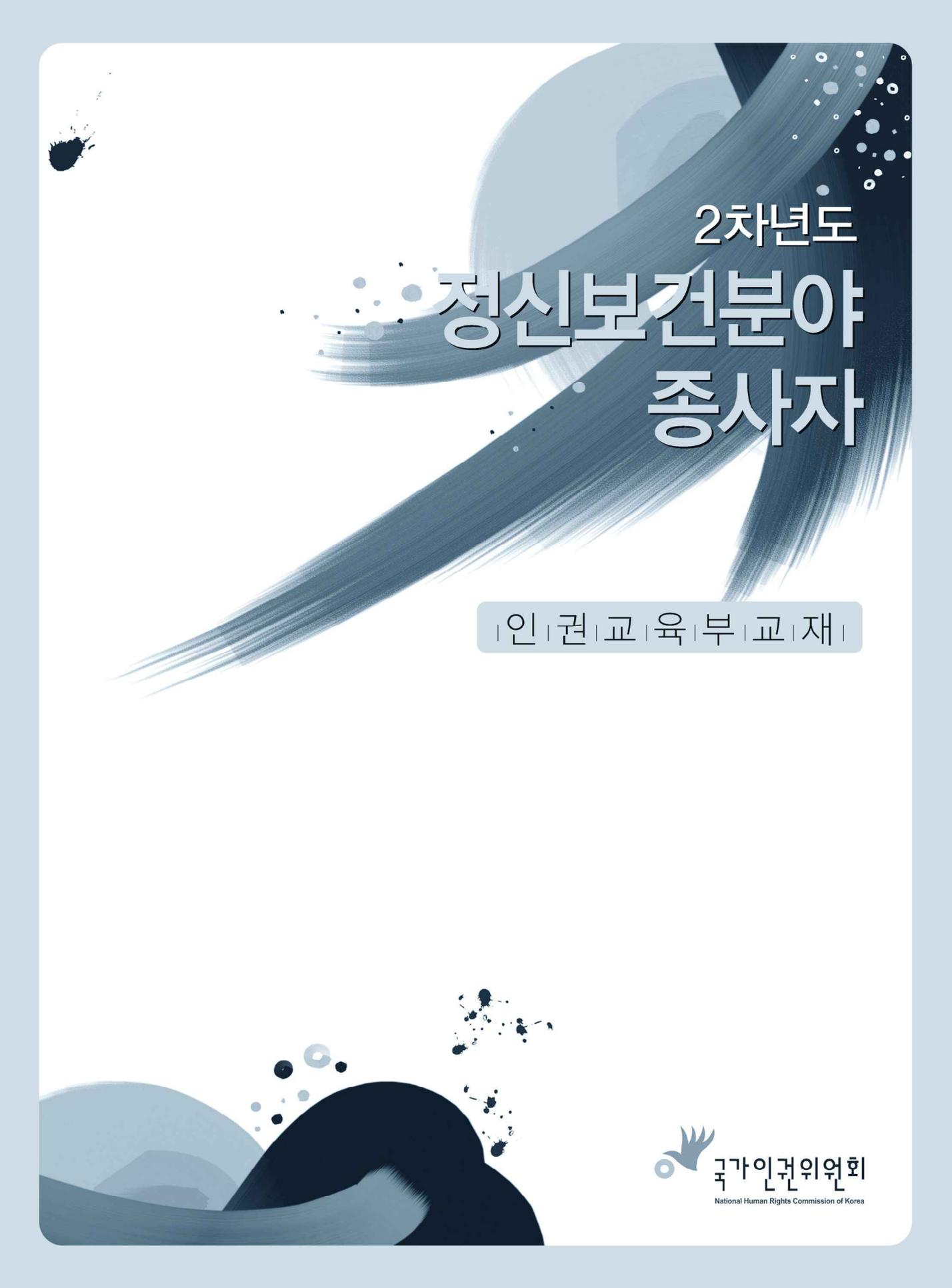
2차년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 권 교 육 부 교 재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차년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부|교|재|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차년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시 간	소요시간	교 육 내 용
1:40~2:00	20분	수강자 등록
2:00~3:10	70분	제1강 주요 권고사례를 통한 인권의 이해
3:10~3:20	10분	휴식
3:20~4:50	90분	제2강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례 토론
4:50~5:00	10분	휴식
5:00~5:50	50분	제3강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중심으로)
5:50~6:00	10분	평가 설문지 작성

Contents

제1장 주요 권고사례를 통한 인권의 이해

1. 여성	8
1) 부서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	8
2) 여성유치인 숙곳 탈의 시 성적수치심	9
3) 성희롱 사건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11
2. 남성	13
1)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남학생 제한	13
2) 이혼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불인정	14
3. 비정규직	16
1)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16
2) 비정규직 상담원이라는 이유로 직원교육 불허	17
4. 장애인	19
1) 특수대학원에 합격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미제공	19
2)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운영	20
3)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21
5. 학생	23
1)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합, 자퇴 각서 강요	23
2) 고교투수 흡사	24
3) 학생운동선수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26
6. 외국인	28
1)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28
2) 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등록 불허	29
3) 미등록 이주아동 중학교 취학 불허	31
7. 나이에 의한 차별	33
1)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	33
2)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나이 제한	35
3) CCTV 모니터 요원 45세 나이제한	36



8. 기타	38
1) 전화상담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 강요	38
2) 고지서 주소란에 주민번호 표기	39
3)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40
4) 채용 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	42
5) 호적정정자 징병신체검사 시 수치심 유발	43
※ 〈참고자료〉 진정처리 절차	45

제2장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례 토론

1. 입·퇴원 및 전원	52
2. 무자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55
3.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	58
4. 전화사용 금지 및 제한	60
5. 서신제한	62
6. 격리·강박	63
7. 작업치료	65
8.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67
9. 병동규칙	68
10.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종사자 폭언 및 폭행	69
1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71
※ 〈참고자료〉 진정사건 결정례	72
㉠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72
㉡ 부당한 입원 및 계속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79

Contents

제3장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84
2. 진정권리 및 면전진정 절차 등	89
3. 진정함 운용방법	91
4. 인신보호법	98

부록

1. 격리 및 강박지침	104
2. 작업치료 지침	107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113
4.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	116

제1장

주요 권고사례를 통한 인권의 이해

| 여성 | 남성 | 비정규직 | 장애인 | 학생 | 외국인 | 나이에 의한 차별 |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 부서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

■ 진정내용

2006년 8월 B씨는 이혼여성으로 특전사의 부서관 모집에 응시하였으나, 관련 육군규정이 여성인 경우에는 미혼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기혼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육군과 특전사의 해석에 따라 탈락하여, 특전사 부서관 모집 시 여성이 이혼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다.

■ 조사결과

특전사 부서관 모집 시 여성이 이혼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성 부서관 모집 시 미혼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육군과 특전사에 권고하였습니다.

여성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외에도 남성에게는 기·미혼을 상관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만 미혼의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두 가지 쟁점인 혼인여부 차별과 성차별 여부를 모두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육군과 특전사의 답변은, 여성을 미혼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특전사 부서관 선발 후 14주의 양성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나이가 팀워크나 단체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혼여성의 경우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 여성은 기혼 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명시적 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군과 특전사가 주장하는 임신 가능성과 단체생활의 어려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혼 여성과 미혼 여성은 모두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이므로 구분의 실익이 없고 같은 범주로 포섭,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록 미혼으로 부서관에 임용되었다 할 지라도 양성 교육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 결혼할 수도 있고 임신부가 이수하기에는 무리인 양성

교육이 있음을 알고도 응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쉽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양성기간 중의 사고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여성에게만 유독 혼인여부에 따른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특전사 부서관 모집에서 아예 여성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으며, 군, 경찰 등 종전에 남성 집중직무로 여겨졌던 분야들이 양성 평등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직업 군인 모집에서 남녀 간에 자격 요건 등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엄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서관 응시자격으로 미혼 여성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성에게만 혼인여부로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들에게 부서관 모집 시 이혼 여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과 나이가 현재 여성에게만 미혼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육군규정 106 제19조 단서조항¹⁾)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시 성적수치심

■ 진정내용

2008년 8월 진정인 A씨(여, 27세)와 피해자 8명은 “여름철이라 얇은 옷을 입거나 목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장 입감 시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브래지어를 탈의한 채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있었으며,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못한 채 남자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거나 이동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여성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 요구 시 그 취지를 충분히

1) 육군규정 106 (부서관 획득 및 임관규정) 제19조 ②임관일을 기준하여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 단, 여군지원자는 미혼여성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브래지어 탈의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며 위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08. 8. 15. 촛불집회에 참석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각각 강남경찰서, 중부경찰서, 마포경찰서로 연행된 후 유치장 입감 시 신체검사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한 후 유치장에 입감되었습니다. 이후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08. 8. 16. ~ 8. 17.까지 브래지어가 탈의된 상태로 1 ~ 2회의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여성유치인이 착용하고 있는 속옷의 일종인 브래지어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에 해당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9조에 따라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는 개념에서 목적을 설명하고 유치인들에게 제출받아 보관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스타킹, 브래지어는 위험물인 ‘끈 종류’로 보아 제한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살이 가능하다는 법의·과학적 소견을 보내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브래지어가 여성 유치인의 속옷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외국사례, 인권정책의 흐름, 일선 유치인보호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가 유치인의 자해·자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해도 기본권 제한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름철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할 경우 신체의 일부가 비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얇은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한 후 아무런 보완적 조치 없이 약 48시간을 유치장내에서 생활하게 하고 경찰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성희롱 사건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 진정내용

진정인 L씨(여, 40세)와 E씨(여, 47세)는 G구청이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의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 승계되어 2년 정도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해왔다.

진정인들은 “2008. 3.초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K기업이 기존 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모니터요원 18명 가운데 진정인들만 탈락시켰는데, 그 이유가 진정인들이 이전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한 것 때문”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기업에 피해보상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K기업은 2008. 3. 1.부터 1년간 G구청과 CCTV 관제센터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전 업체 소속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채용 면접 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 등을 검토해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채용 결정 당시 진정인들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는 관련 고소자 8명 가운데 6명을 채용한 사실로 확인된다며, 성희롱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진정인들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진정인들이 채용 면접에서 탈락한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과 관련해, K기업이 ‘진정인들이 경찰관과 성희롱 문제로 쌍방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음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채용 결정 당시 진정인들이 성희롱 관련 고소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들과 함께 근무했던 모니터요원들을 면접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실시한 면접은 모니터요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모니터요원들의 근무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변화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2007년도 모니터요원들의 범인검거 실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들의 실적은 오히려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성희롱사건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는 것 외에 채용면접에서 탈락할 만한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성희롱 관련 고소를 한 것이 이 사건 채용에서 진정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 주된 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성희롱은 성차별적 인식의 반영이자 결과적인 면에서 고용과 관련해 피해 여성(또는 남성)을 불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성차별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희롱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권고했다.

2

남성

1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남학생 제한

■ 진정내용

국가인권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비로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교육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미혼여성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06. 3.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조건보다 더 엄격히 키, 몸무게, 내반슬(일명 안짱다리)에 관한 제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국군간호사관학교학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 키 157cm에서 183cm, 몸무게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는 것은 군사훈련, 야전 및 전시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내반슬이 있는 자를 불합격 시키는 것은 체중부하시 관절 등에 불편감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성별, 특정 신체조건에 따라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조건이 학업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또는 이후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간호장교의 업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성별로 제한하지 않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을 보아도 간호장교의 직무가 여성으로만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2004. 1. 20.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이 미혼의 여성에서 미혼자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이 개정되어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간호장교로서 강인한 체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신체조건인 '신장 155cm 이상 184cm 미만, 몸무게는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

‘보다도 엄격하여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군간호사관학교는「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서 내반슬을 불합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슬관절학회의 의견에 의하면 2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 미만인 경우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현역 사병으로 근무가능하고, 슬관절 간격 2.5cm~5.0cm 미만인 경우도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사병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육군본부 간호장교에 대한 기준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신체조건 중 키 157cm에서 183cm 사이, 몸무게 45kg에서 72kg 사이 및 내반슬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이혼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불인정

■ 진정내용

진정인 C씨(남)는 이혼한 형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하였으나, 이혼한 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는 이혼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진정을 2006년 4월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 시 가입자의 이혼한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피부양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가입자 본인

을 중심으로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입자와 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혼인 ‘형제·자매’는 가입자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법상 피부양 관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기혼인 형제·자매는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의 목적상 기혼인 형제·자매는 가입자가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여자는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하고 남자는 폐질, 심신장애 등 결격사유로 이혼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하고 있고, △가입자와의 실질적인 부양관계 및 경제적 능력 여부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미혼 여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확실적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별표 1〕에서 가입자와의 관계가 형제, 자매인 자의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으로 ①동거하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혼으로 부모·형제·자매가 없거나 부모·형제·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부모·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인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는 반면에, △형제·자매가 미혼이 아닌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한 형제·자매의 경제적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자는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된 경우와 남자는 폐질, 심신장애 등 결격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만 미혼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고 있어 직장 가입자의 이혼한 형제·자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안내」5쪽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후 이혼한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가입자에 의탁하여 소득을 공유하면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혼한 형제·자매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험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별표 1〕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3

비정규직

1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 진정내용

진정인 P씨는 약 4년 8개월 동안 B대학교병원에서 핵의학장비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했던 임상병리사로, 계약서상 단시간근로자로 시급단위의 임금을 수령했지만 근무기간 동안 줄곧 상근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A대학교병원은 진정인의 경력이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아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A대학교병원에게 진정인의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진제 아래 운영되는 호봉제도의 성격을 볼 때 과거 경력의 내용을 보지 않고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정인이 B대학교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나 중요도가 정규직에 비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보아 A대학교병원에게 구제조치를 실시할 것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 12월에도 C공사가 신입 직원의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데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과 구제조치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2 비정규직 상담원이라는 이유로 직원교육 불허

■ 진정내용

진정인 P씨는 비정규직 상담원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전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할 수 없었다며 이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2007년 4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한국○○원장에게 직원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비정규직 상담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원의 상담원은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으로 소비자 상담 업무를 위해 고용된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담원의 업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담 제공에 국한되고 다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상담 업무의 능력향상과 관계가 없는 정규직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배제되었다고 하여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상담원의 상담 내용은 일반 소비 생활 분야는 물론 전문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상담원의 신분이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1년 계약직이라고는 하나,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4년 이상 근무해 온 상담원이 66.7%였고, 10년 이상을 근무한 상담원도 있었다.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의 내용 및 성격을 살펴보면 경영일반, 직무능력, 정보기술 등 다양한 내용의 직장인에게 필요한 교양적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원의「교육훈련규정」에도 훈련교육대상의 범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반드시 교육대상 직원의 범위가 정규직에만 한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었다. 더 나아가 피진정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담원 21명이 최대 2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내외여서 한국○○원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비용 부담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상담원들에게 온라인 교육과정 전체를 수강하지 못하도록

교육 기회를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 교육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도 수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장애인

1 특수대학원에 합격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미제공

■ 진정내용

2급 청각장애인 진정인 B씨는 2006년 2월 K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에 합격하고, 수업 참여를 위해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B가 40%, K대학교가 60%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화통역사 비용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K대학교는 수화통역사 지원 대신 강의안이나 강의 녹화자료의 사전 제공을 제의하면서, 고려대의 60% 부담은 지원자의 등록금(500만원)으로 감당하기에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B는 2006년 3월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특수대학원 강의가 대화식 또는 참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화통역 없이는 진정인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어 수화통역사 지원은 적절한 편의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K대학교가 산출한 분담금에는 진정인이 분담을 요청하지 않은 수화통역사의 교통비와 숙식비, 정규수업 외의 학생자치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해당 비용이 분담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렇게 산출된 분담금은 노동대학원의 재정운영 규모로 볼 때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07년 9월 21일 K대학교 총장에게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해 수화통역사 비용 분담 방식을 포함한 수강 편의 제공과 향후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K대학교는 청각장애인에게 있어 수화통역이 적절한 편의제공임을 인정하고, 2008년부터 모든 특수대학원 교과과정에 합격한 청각장애인에 대해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정규수업에 한해 수화통역비용을 지원해 주는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했다고 통보해 왔다.

참고로, 국가인권위는 K대학교 외에도 2006년 1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해 출석수업

때 청각장애인 학생에게 수화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007년 11월 국가기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수화통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국가기권위에 통보해왔다.

2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운영

■ 진정내용

진정인 P씨는 “경기도가 주최한 ‘2007 제4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종꿈나무도서관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7년 10월 국가기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기권위는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인용 화장실(이하 한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포천시장애인에게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종교육문화센터건물에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포천시는 백운계곡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목적화장실로 설치했으며, 영종꿈나무도서관은 영종면사무소와 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이 입주해 있는 영종교육문화센터 건물의 일부이며 이 건물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권위는 ‘편의증진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남녀공용으로 기 설치된 이들 장애인용 화장실 시설을 현재의 건물구조, 구체적 이용여건, 시설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사항을 고려해 차선책이라도 장애인이 편리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개선 여지를 찾는데 실익이 있음을 전제로 차별 여부를 판단했다.

한편 남녀공용으로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일정 부분 예컨대, 화장실 이용 시 동반

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특정유형의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이 이용자인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한 화장실 이용의 실용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하고,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포천시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현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 구분해 개조하는 데는 일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편의증진법」제15조에서 정한 적용의 완화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포천시가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점, △두 시설의 화장실을 개조하는 데는 드는 비용이 포천시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천시가 장애인용 남녀 공용 화장실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3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 진정내용

진정인 B씨는 “우체국에서 상해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우체국에서는 진정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2008년 4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에게 정신장애 및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 권고는 국가인권위가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2008.4.11. 시행)을 적용한 사례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8월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를 삭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1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합, 자퇴 각서 강요

■ 진정내용

진정인 S씨는 피해 학생의 큰아버지로 “조카가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는데, 조카는 평소 담임교사로부터 무모한 언사와 체벌을 받은 바 있고, 사고 당일에도 담임교사로부터 아침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았으며 자퇴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하고 부모님 확인까지 받아오게 하여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으로 2009년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A고등학교 피진정 교사의 학생지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A고등학교 교장에게 담임 교사를 경고조치하고,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인 측에서는 사고당일 피해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10여분 가량 기합을 준 사실과 각서 징구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폭언이나 직접적인 체벌은 하지 않았으며, 학생이 자살한 이유는 학교의 체벌보다는 아버지로부터 체벌 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각서 내용은, ‘피해학생이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자퇴를 서약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각서가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학교장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 방침이 있었지만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에게 기합 등 체벌

을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해학생의 자살 원인이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사건 당일 담임 교사가 피해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는 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과, 기합 등이 피해학생에게는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느껴져 자살에 이르게 한 간접적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임교사의 위와 같은 피해학생에 대한 기본권 침해나 각서 강요가 자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교장에게는 해당교사를 경고조치하고, 교직원 상대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충북도교육감에게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 고교투수 혹사

■ 진정내용

진정인 A씨는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들이 짧은 대회기간 동안 경기에서 무리한 투구 및 연투로 선수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혹사를 당하는 것은 나이 어린 학생에 대한 학대이자 선수 수명 단축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는 대회입상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되는 감독의 비정규직 신분 문제, 학생선수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전국대회에 입상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의 체육특기자 대학입시기준의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대한야구협회가 선수보호에 필요한 경기운영과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교야구대회에서 고교투수들이 과도한 투구 및 연투로 인해 신체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야구협회는 “투수들의 평소 운동량과 신체발달 정도에 따라 어깨 단련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한계 투구 수가 몇 개인가에 대해 인위적·일괄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으나, 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방학 중 경기를

제외하고는 각 학교의 전국대회 출전을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투수가 투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교야구에 지명타자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 답변하였다.

관련 학교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교야구 투수들의 혹사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며 고교시절 맹활약을 펼치던 선수가 몸이 망가져 프로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초·중학교 투수들도 연습, 시합 때 혹사하여 어깨, 팔꿈치 수술을 하고 있다” 고 답변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고교 야구 체육 특기자에 대한 대학입학의 특전, 비정규직 신분 감독의 경우 단기간의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될 수 있는 점, 토너먼트 진행방식으로 한번 지면 탈락하는 점, 한 대회기간이 짧아 충분한 휴식 없이 진행되는 점,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특정 우수투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고교야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수투수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가 무리하게 많은 투구를 함으로써 혹사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언론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야구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대한야구협회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 혹사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연구 또는 자문 등 용역, 의학적·신체적 연구 용역, 논문 등), 성장기 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후유증 발생 등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연구 또는 용역,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생명단축 사례·실태 조사·연구 등의 투수 혹사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 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만약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인하여 선수생명을 위협·단축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헌법」 제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한야구협회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 외의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고교 투수들의 혹사 이유가 비정규직 감독신분 문제 및 체육 특기자 입시기준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또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으며, 체육 특기자 입시기준의 문제점 역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에 의거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그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3 학생운동선수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진정내용

진정인 J씨는 “아들(피해자)이 A고등학교 농구부에 진학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있어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던 중 2009년 11월 2일 전출희망 학교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았으나, A학교에서 전학 및 이적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A고등학교장에게 전학 및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2009년 3월부터 A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A고등학교 농구부는 최소 10명~12명의 인원을 유지하는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7명의 인원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9년 10월 서울 소재 B학교로 전학 신청을 하여 2009년 11월 2일 입학허가를 받고 다음날부터 등교를 시작했으나, A학교는 2009년 11월 3일 자체 회의를 거쳐 전학 및 이적 동의 허가를 해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사 당시 피해자는 전학서류가 송부되지 않아 B학교의 체육관으로 등교하고 있었다.

A고등학교측은 피해자인 학생에 대해 전학 및 이적동의를 허용할 경우 △지방 학교의 특성상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잔류 선수들이 타 학교로 이탈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학 및 이적동의를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9조, 제12조 의 취지에 따라 A고등학교는 학생인 피해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과, △A고등학교가 전학 및 이적동의 제한 근거로 제시한 「중·고등학교 농구연맹 지도자 및 선수 등록 규정」에는 피해자의 타 학교 전학 시 피진정인에게 전학 및 이적동의 권한을 법률적으로 부여한 조항이 없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지방 농구의 균형적인 육성’의 의미는 우수선수의 타 시·도 전

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사항이지 전학 및 이적 자체를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로 A고등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학동의서 및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

A고등학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전학 및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했다.

1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 진정내용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사용 등을 위해 실명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아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하던 중,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3월 착권 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은 국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게시판 이용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든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 요청 시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 이러한 등록번호가 없으면 외국인은 인터넷 상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통한 별도의 확인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반면 내국인은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DB에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 수단을 전달하면 DB에 해당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2)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최근 한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국내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이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지만, 다른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혜택 받는 대상은 60여 사이트에 불과하다.

또한 많은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 자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대표에게 ①신분증명 서류에 근거한 본인확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 ②외국인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인에게도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 ③개별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사이트에 이를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향후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메일과 성명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상거래 이용 시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실명확인 방식을 사용하거나 국적이나 체류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가 일부 제한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등록 불허

■ 진정내용

진정인 W(대만 국적)씨 등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등록 신청이 되지 않아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 시책은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영화, 공연 할인

등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모두 등록장애인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으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 보다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곤란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 때문에 공공부조와 같은 현금 급여적 성격과는 달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이용가능성 여부가 해당 장애인에게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불허하는 사유로 공공부조의 부담과 관리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외국인이 장애인등록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대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별도의 세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장애인등록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공부조의 부담이 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았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대상을 개별 사업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및 급여적 성격의 수급권 적격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등록조차 불허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가인권위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에 대해 국내 장애인보다 우월하게 배려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절차적으로 과도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일정한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 국적 장애인에게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권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를 가진 외국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의 기초 자격증명 요건인 장애인등록 신청은 국적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나 각종 장애인 관련 국제 기준, 그리고 최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3 미등록 이주아동 중학교 취학 불허

■ 진정내용

미등록 이주 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현행「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총 69,987명이며, 이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8,259명으로 추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8.현재 통계)되고 있다. 한편,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아동은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듯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이 낮은 이유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와 함께 취학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8. 2. 2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을 개정해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던 것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학절차를 같음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조치이나 개정 내용이 초등학교 입학에 한정되어 있어, 중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과정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1. 비준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비준 당사국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 우리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최소한 중학교 과정까지는 어떤 사유로도 취학을 원하는 아동이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나이에 의한 차별

1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

■ 진정내용

진정인 A씨 등 8인은 “경찰청이 순경, 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차별”이라며 2008년 8월 ~ 2009년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B씨는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사·소방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9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입직과 동시에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범인 검거 및 추적, 시위진압 등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직무 특성상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의 입직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 근거로 ‘2007년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보고(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경찰 채용시 응시연령을 제한 사례를 들어 연령 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해 젊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망·부상 위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24시간 긴급출동 대기로 인한 긴장감, 수면부족 등이 상존하는 격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일반적으로 20kg 이상의 무거운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화재진압 및 구조요청자를 구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며, 일반 행정은 물론 소방시설, 위험물, 건축, 전기, 응급의학, 긴급현장 대처기법 등 인문·자연과학의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학문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젊은 인재를 확보해야 하고 이 때문에 일정수준의 연령제한이 특별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의 주장에 대해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이 순경으로서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현행 공개경쟁 채용시험 체제에서 순경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체력을 개인별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순경 공개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면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를 통해 응시상한 연령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검토 없이 막연히 ‘체력이 좋고 젊은 우수인력 채용’을 이유로 순경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응시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청이 제시한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는 해당 연령대의 평균치로서, 이는 관리하기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체력의 개인별 속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예와 달리 미국 등에서는 최저연령(2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한연령은 제한하지 아니하는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현행 응시연령 제한의 합리적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 제한과 관련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소방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강인한 체력 및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근력과 지구력, 순발력을 포함하는 체력의 쇠퇴가 일생의 어느 시기에 시작되는가는 각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큰 편차가 있고, 지적 능력 역시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나이를 기준삼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현행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체제는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지식 등에 대해 검증하고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2009. 1. 1. 개정된「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1310호) 제16조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과 관련하여 일반직은 7급 이상의 경우 20세 이상, 8급 이하의 경우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으로, 기능직은 18세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되었다. 또한 2009. 3. 22.부터 민간 영역의 고용상 나이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2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나이 제한

■ 진정내용

P씨가 2007년 3월 “H대학교 항공운항학과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 병역미필자는 만 20세 이전 출생자, 병역필자 및 병역면제자는 만 24세 이전 출생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H대학교총장에게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시 나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H대학교는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선발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조종사 양성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정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나이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조종사 양성 과정의 특수성을 무시한데 따른 부작용이 크고, 3~4년 동안 비행훈련을 받다가 30세를 넘겨 건강 및 기량부족으로 중도 탈락할 경우 다른 진로를 택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해 2학년 과정을 마친 재학생은 민간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취업을 전제로 운영되는 본1과 또는 군장교 임관을 전제로 운영되는 본2과로 진학하거나 전과 등의 진로가 있고,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조종사 외의 다른 진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일정 나이 이상인 자가 오로지 항공사 취업만을 목적으로 자가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항공운항학과 입학 시험의 응시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항공대 졸업생을 한명이라도 더 항공사 취업 또는 군장교로 임관케 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하려는 수험생을 능력 이외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3 CCTV 모니터 요원 45세 나이제한

■ 진정내용

진정인 L씨는 “G구청이 2008. 2. K기업과 관제센터 모니터 용역계약을 맺을 당시 과업지시서에서 모니터 감시요원 자격요건을 ‘연령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2008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G구청이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자격요건을 ‘연령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G구청장에게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자격요건을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G구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범용 CCTV 감시 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24시간 3교대 모니터링에 따른 체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령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였으나,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고려 및 탄력적인 여성인력 활용을 위하여 2009년에는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만 50세 이하”로 요건을 완화했다고 답변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니터 요원의 주된 업무는 모니터 감시, 실시간 전송되는 자료 모니터링 및 보고 등으로 G구청의 주장대로 컴퓨터 활용 능력 및 위기 및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능력을 나이 만 45세 또는 50세 이하인 자만 갖추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체력이나 위기 대처능력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큰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나이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G구청이 위원회 조사 중 2009년 G구청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자격요건 중 나이를 ‘만 50세 이하’로 완화하였지만, 이 역시 업무수행능력이 아닌 일률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모니터 요원의 선발 기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체력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올해부터 민간 영역의 고용상 나이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일 뿐만 아니라, 극심한 취업난 속에 나이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 관심 및 차별 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인 G구청 또한 불합리한 나이차별을 시정할 책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시정 권고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G구청은 2010년부터 관제 센터 모니터링 용역계약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즉시 통보해왔다.

1 전화상담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 강요

■ 진정내용

진정인 A씨와 B씨는 “국세청과 노동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전화상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2008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노동부와 국세청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상담 내용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노동부장관과 국세 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상담관은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상담시스템은 여타 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민원인의 납세 자료 등의 개인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민원 내용이 단순 정보 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신고 절차, 직업훈련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이 때 타 부처의 관련 기록 조회 등 상담을 신속·정확히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화고객에 대한 자료 축적을 통해 문의 유형 분석, 제도 개선 등 건전한 상담문화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이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산등록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의 구분 없이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미입력 시 상담원과의 통화는 물론 일반적 안내상담조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토해양부는 진정접수 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2 고지서 주소란에 주민번호 표기

■ 진정내용

진정인 L씨는 “공주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우편물 겹면에 진정인의 개인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명기하여 타인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며 2007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공주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우편물 겹면에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명기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주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주시청은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정유를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고지서 서식은 환경행정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된 고지서 영수필통지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되나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시하고 있으며, △차량소유자가 한 명일 때는 고지서 우편물 주소란에 주민등록번호는 출력되지 않고 이름만 출력되고 있으나, 자동차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고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는 공주시청이 ‘환경행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작업 과정을 소홀히 하여 고지서의 주소란에 개인정보를 명기하여 송부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 진정내용

진정인 B씨는 “A은행이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결제능력이 있더라도 ‘주부’로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며 200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은행에서도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9년 8월 직권조사를 결정해 A은행을 포함한 16개의 모든 신용카드 발급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16개 중 11개의 신용카드 발급기관은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가사전업자에게 성별과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 5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A은행과 B은행은 △남성의 가사 전담을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무직자와 가사전업자의 객관적 구분이 곤란하며, △가사전업을 명목으로 결제능력이 없는 남성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경영상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남성을 가사전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신청인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당연하다 할 것이고, 가사전업자에게 배우자의 동의 및 결제 능력을 전제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 또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자와의 공동생활을 통해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배우자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기인

하는 측면이 크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고용의 유동성 증가로 양 배우자 중 현재 어느 쪽에 직업과 소득이 있는 지에 따라 배우자간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현실³⁾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아직 가사전업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점이 남성 가사전업자의 존재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직업과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남성이 실제로 가사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이 확인되는 한 실제 가사 수행 여부가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여성 배우자가 결제능력을 뒷받침한다고 상환 불이행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이유가 없고, 이미 많은 신용카드 발급기관들이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는 점에서도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경영상 수익성,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가 1985년 비준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완전한 성평등 달성을 위해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뿐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천명하고, 당사국은 평등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국가적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통계청 자료 : 가사 또는 육아를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 15만명 내외(2009.7)

4 채용 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

■ 진정내용

진정인 K씨는 “대졸신입행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면접까지 통과했으나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탈락했는데,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8년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신입행원 채용 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은행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시 면접 및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A은행은 △진정인이 배치될 부서는 고객 민담이 주요 업무인데 이 과정에서 전염 위험이 높고 △술자리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면 B형 간염으로 쉽게 발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답변하면서도, 진정인의 경우 면접 시 태도점수가 낮아 탈락한 것으로 신체검사 결과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신입사원 채용 시 태도점수가 신체검사 이후에 부여된 점수라는 점 △신체검사 불합자 발생으로 추가로 신체검사 대상자가 된 응시자에게 진정인보다 2배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종합소견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건강보유자⁴⁾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미 2000. 10. 5.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간염’은 수직(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 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으므로 동 질환의 관리방법을 격리 등 의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를 개정한 바 있으며, 대한간학회에서 2002년도에 발표한 간질환

4)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서 감염환자 단계로 가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바이러스 보유자

관련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의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코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기존의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A은행이 신체검사 이후 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낮은 태도점수를 부여해 최종합격자에서 제외시켰다고 판단했다. 또한, A은행 측이 향후 업무수행으로 인해 진정인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3. 10. 22. 간염검사를 명시하여 간염예방접종 필요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관련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여부가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병력을 이유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5. 12. 30. 동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5 호적정정자 징병신체검사 시 수치심 유발

■ 진정내용

법원에서 호적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되어 징병신체검사 대상자가 된 K씨(남)가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법원결정문 및 진단서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는데도 징병전담의사가 바지를 내리게 하여 신체상태를 직접 검사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징병신체검사 시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K씨의 징병신체검사를 담당한 징병전담의사는 △관련규정 상 징병

신체검사는 내·외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 비뇨기과 검사와 같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는 별실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바, 당시 진정인에게 당 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외부와 독립된 공간에서 시진(視診)하였고, △법원결정 문 및 진단서는 신체등위판정에 객관성을 보충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며, 신체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첨부서류만으로 판정하는 것은 정밀신체검사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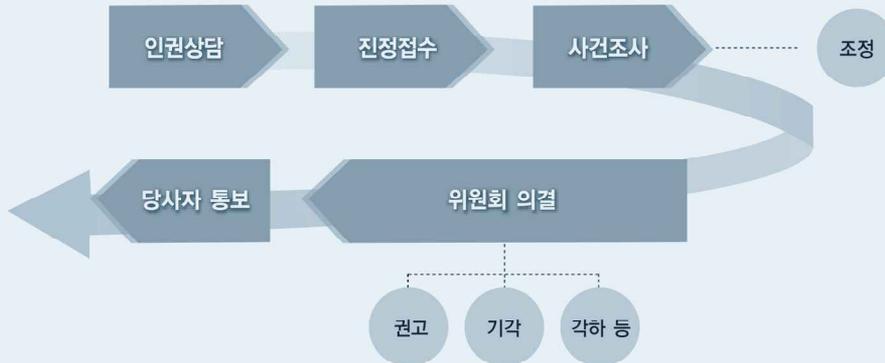
2006년 6월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로는 최초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 자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시하고, 이를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한 이래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호적정정 허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정정한 자(이하 ‘호적정정자’)가 병역의무 부과 대상 나이에 해당하면 병역법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07년 6월 현재까지 진정인을 포함하여 4명의 호적정정자가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병무청은 현재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호적정정자에 대한 명백한 적용조항이 없어 비뇨기과 부분 중 ‘고환결손 및 위축’ 조항을 적용하고 있고, 곧 호적정정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밝혀 왔다.

국가인권위는 K씨에 대해 신체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의사의 진단을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고 특히, 일반적인 병역의 무자들과 달리 특수한 병력 및 신체를 가진 진정인에게 이는 더욱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 점, △진정인은 이미 법원의 호적정정 허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거쳤으리라 예상되는 점, △지금까지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하여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사례를 보면 하체부위를 직접 시진한 경우는 없고 법원결정문, 진단서 등 참고자료 또는 CT촬영 영상을 참조하여 판정한 점, △진정인의 경우도 필요하다면 CT촬영 등 간접적 방법으로 신체상태의 확인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진정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는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격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현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호적정정자에 대한 명백한 적용조항이 없고, 관련조항에 따른 합리적인 검사방법의 공유가 미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참고자료]

진정처리절차



▶ **진정접수**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면전진정^①의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한다. 인권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진정은 진정서 등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벌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조사본부로 옮겨진다.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8조^②에 정한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제31 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48 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승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사건조사

각 조사본부에 이송된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며,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상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게 된다.

※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상임위원회 등 소관 소위원회의 의결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정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 회부 직전의 조사 또는 심의 절차로 돌아가 진정사건처리를 진행한다.

▶ 위원회 의결

위원회(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는 조사부서에 추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의결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필요한 구제조치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을 기각하고, 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는 각하한다.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사건은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전원위원회는 진정사건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주요안건을 심의한다.

▶ 당사자 통보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한다.

[참고자료]

결정유형

▶ 인용결정

(1) 구제조치 등의 권고위원회법 제44조

-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시 제4항⁶⁾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고발 및 징계권고(위원회법 제45조)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합의권고 위원회법 제40조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4) 법률구조요청(위원회법 제4/조)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7) 제42조 (조정) ④조정에 같은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기각결정(위원회법 제39조)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각하 등 결정(위원회법 제32조)

-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 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성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 조정(위원회법 제42조)

-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소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례 토론

입·퇴원 및 전원	무자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	
서신 제한	격리·강박	작업치료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병동규칙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종사자 폭언 및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

입 · 퇴원 및 전원

■ 사례

B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7개월째 입원 치료중이다. 최근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 퇴원결정이 내려졌지만 보호의무자가 다른 시·도에 살고 있으며, 병원에서 멀기 때문에, 퇴원을 시키려면 휴가를 내서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 일이 바빠 휴가를 내기 어려워 환자를 퇴원시키러 올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곧 데리러 오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서, 결국 퇴원 명령이 내려진 지 거의 한 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퇴원시키러 방문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강제로 환자를 내보낼 수가 없어 계속 입원을 시키고 있었다.

결국 병원에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보호자의 집까지 환자를 모셔다 드렸으나, 보호자는 환자를 돌볼 수가 없다고 하여 그 다음날 다시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다시 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입원이 곤란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보호자는 다른 정신병원으로 환자를 모시고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켰다. 다른 병원에서는 환자가 강제 퇴원명령에 의해 퇴원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호자의 말을 듣고 입원을 시켜 관찰하고자 하였다. (퇴원명령의 불이행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분야 인권교육 교재, 2009. p.49)

■ 질문

- 1) 퇴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있으나 가족이 거부하여 계속 입원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위 사례처럼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보호자의 말만 듣고는 다시 입원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 퇴원 후 갈 곳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는 입원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신보건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⁹⁾

2008년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 121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퇴원 후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49.1%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퇴원한 지 하루 만에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55.9%, 일주일 이내에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60.9%로 나타났다.¹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은 당해 정신질환자가 증상이 회복되어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퇴원을 명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퇴원한지 하루 혹은 일주일 이내에 입원된 것은 급성적 반응을 보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횡수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횡수용화와 관련하여 이를 모니터링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정신보건법 제39조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건소에 위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인력기준에 대한 심사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조의 규정을 현지조사를 통한 지도·감독으로 개정하고 지도·감독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등수가제의 실시와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적정성 평가의 재입원율 지표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내 환자의 입·퇴원 상황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정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입·퇴원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부당한 입·퇴원 반복 및 횡수용화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관할 보건소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지 받은 보건복지부 및 관할 보건소는 즉시 통지된 기관을 방문하여 입·퇴원 절차 및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등을 검사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통지함으로써 부당한 입원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¹¹⁾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비정신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 따라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함께 숨 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모든 정신장애인은 가급적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2009), p.153

10) 박종익 외(2008)

11)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2009), p.155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가 완료되는 즉시 지역사회로 복귀하여야 한다.¹²⁾ 그러나 국내 정신장애인의 상당수는 지역사회보다 시설에 입원되어 있는 실정이며, 퇴원 후에도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재입원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보건과 관련한 대부분의 예산을 재활과 사회복귀가 아닌 입원치료에 투입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매우 취약하다.

이와 같이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재입원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는 정신장애인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잦은 입·퇴원과 입원의 장기화는 개인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보편적인 삶의 향유를 저해하며, 국가의 의료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정신장애인이 가장 덜 제한적인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치료 받고 보호 받음으로써 환자의 인신구속이 최소화되고, 국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2) MI Principles 원칙 7 1. 모든 정신장애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치료받고 보살핌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2. 치료가 정신보건시설에서 이루어질 때, 환자는, 가능한 언제나, 그들의 거주지 혹은 친척 또는 친구의 거주지 근방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치료가 끝나는 즉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3. 모든 환자는 그 지역의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무자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사례

2010년 1월 진정인은 배우자와 딸이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딸은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안 된다. 그리고 진정인의 직계가족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다. (사건번호 10진인361)

이복 여동생에 의해 정신병원에 1년 4개월 동안 강제 입원되었다. 이복 여동생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8년여 동안 서로 연락이 두절된 채 지내는 사이였으므로 K씨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음에도 병원들은 이복 여동생을 K씨의 보호의무자로 인정하여 입원을 결정한 것이다. (사건번호 08진인3944)

■ 질문

- 1) 정신보건법 제21조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자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무자격자의 의해 입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환자가 보호의무자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지만 전화도 잘 안 받고, 면회도 잘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호의무자의 자격과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보호의무자 자격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같은 가구원으로 지내는 것이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금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면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세대가 다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이다.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를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받아야 한다.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7조(벌칙) 제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의무자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자조모임 활성화⁹⁾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인 보호 부담과 정서적인 부담감을 고려하였을 때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확충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가족들의 부담은 사회적 편견 및 사회복지시설의 미비 등 다양한 원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저소득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연금의 도입, 장애수당 제도의 수급대상 확대 및 급여의 증액, 정신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을 위한 제 가정신장애인보호수당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 “한국정신장애인연합”과 “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가 있다. 이들은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및 가족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기 세미나 및 체육대회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편견 해소 및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983년 ‘정신장애인 및 가족동맹’(EFAFES)을 결성하여 편견·낙인 해소 운동,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족학교 운영,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활

13)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p.197.

동을 하고 있다. 미국도 정신장애인소비자운동과 자조 집단옹호운동, 가족옹호활동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권리보호를 넘어 정신보건 서비스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여 정신보건정책에 당사자 및 가족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¹⁴⁾

우리 「정신보건법」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정신과 전문의, 판사·검사, 정신보건전문요원과 더불어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¹⁵⁾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 가족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신보건계획 수립 과정에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권리옹호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 그룹운영, 낙인·편견 해소 운동 및 관련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인권상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등 가족과 당사자 옹호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기관 운영위원회에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를 시설 운영 규칙에 포함시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Public Law 102-321에 각 주로 하여금 정신보건계획위원회(mental health planning council)에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연방법에서도 모든 주가 환자의 권리보호와 옹호기능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정신보건법」 제28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과 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정신보건 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3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

■ 사례

진정인 A씨는 모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06. 4. 14. 입원되었다(증상: 모친에게 돈 요구, 미국과 국가기밀에 대한 망상 등). 이전에도 파해망상, 난폭행동, 투약거부와 칼 소지 등으로 6차례 입원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있기 전에도 환자의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퇴원에 대한 요구가 잦은 상태였다.

입원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망상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증상이 잔존한 상태에서는 환자의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의 문제가 존재하는 바, 당시 퇴원에 대한 요구는 환자의 증상이나 병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여겼으며, 보호자인 가족들도 환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사건번호 06진인2441, 06진인2537 병합)

■ 질문

- 1) 입원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퇴원심사청구권, 인신보호 청구권 등에 대해 입원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입원자에게 권리에 대해 고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 치료 과정 및 환경에 대한 고지 및 권리 명시¹⁶⁾

환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신과 신체에 발생한 사실과 앞으로의 치료과정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¹⁷⁾ 이러한 알권리는 자기결정권에 선행하는 기본권으로서 이로 인해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갖는다.

특히 치료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약품의 투여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으로 환자 자신의 생명·신체·건강과 직결되므로 환자는 이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환자의 심신상태 등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 이는

16)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p.138.

17)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보는 학설과 판례(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가 다수 존재한다.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상의 설명의무는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환자의 개별적 사정에 맞추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치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입·퇴원 관련 정보에 대해 대상 환자 중 51.5%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하였고, 50.9%가 약물 치료 전 약물 복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하였으며, 강박과 관련하여서는 34.7%가 강박 실시 전 강박의 이유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답하여, 많은 환자들이 치료과정에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⁸⁾

「정신보건법」은 제6조에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구체화할 별도의 조항이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제공하도록 개정하고, 문서에는 ① 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② 입·퇴원 절차와 방법, ③ 환자 및 보호자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처우 개선, 퇴원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5장에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① 입·퇴원 관련 절차 및 외부교통권을 포함한 권리구제 절차, ② 입원상태 및 치료 상황에 대한 설명과 치료방향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자신의 정보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각 호에 명시하고 환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18) 정인원 외(2008), “정신보건시설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p.22, p.40, p.58. 참조.

4

전화사용 금지 및 제한

■ 사례

한자들이 입원하면 첫 2주 동안은 전화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그 후에는 1일 1회의 전화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병동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주 1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건번호 09진인3092)

병원에서의 전화사용은 주 3회(월·수·금)에 사용시간도 14~15시, 17시~18시 사이에 3~4분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하였다. (사건번호 07진인1582)

■ 질문

- 1) 입원 첫 2주간, 이후 1일 1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가족 또는 보호자가 입원자의 전화 연락을 금지 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 전화사용 시간이 위 사례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통신의 자유 및 면회, 방문 등 외부소통권 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¹⁹⁾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함은 물론 개인간 통신이 방해되거나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강력히 보호되도록 요구하고 있다.²⁰⁾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에게 외부와의 교통(소통)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를 필수적 수단²¹⁾으

19)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p141.

20)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 통신의 자유와 비밀은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핵심 영역이자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헌법」은 제17조의 규정 외에 다시 제18조를 두어 통신영역에서의 비밀과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21) 「인신보호법」상의 법원의 구제청구,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대한 처우개선 및 퇴원 청구 등이 있다.

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²²⁾

「정신보건법」은 제45조에서 ‘통신 및 면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범위 및 제한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남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통신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 요구되는데, 법익의 균형성은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사이의 균형성을 의미한다.²³⁾

행동제한의 최소한의 범위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의 ‘통신 및 면회의 자유’ 제한으로 보호되는 공익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의료적 목적의 달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견제에서, 서신 및 소포에 대한 사전검열은 의료적 목적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무조건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소포 및 물품의 개봉과 관련하여서도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당사자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치료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 자신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르지 않는 일률적인 제한이나 금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0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추상적이고 포괄적 규정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을 개정하여 위 내용과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벌칙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정인원 외(2008), “정신보건시설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13.7%의 환자들이 서신에 대한 사전검열 및 통신의 자유가 금지된다고 응답하여 ‘서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신보건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에 2001. 11 ~ 2008. 2.까지 정신보건시설관련 총 진정건수 2,609건 중 205건에 해당하는 7.86%가 서신·방문·외출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23)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4헌마96 결정

5

서신 제한

■ 사례

진정인이 A병원에 입원하였던 2006. 12. 13. ~ 2007. 3. 29. 동안 담당주치의인 B원장은 진정인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포함하여 모든 서신을 검열한 뒤 간호사로 하여금 발송케 하였다며 국가인권위로 진정하였다. (사건번호 : 07진인1582)

■ 질문

- 1) 환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입원자가 가족이 원치 않는데도 매일 2~3통씩 편지를 써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 입원자가 정부부처, 유명 정치인이나 사회 저명인사 등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p.60.

〈통신의 자유 및 면회, 방문 등 외부소통권 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 참고

6

격리 · 강박

■ 사례

A씨는 B간호사에게 “아가씨”라고 불렀고, B간호사는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고 간호사님이라고 부르세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A씨는 B간호사에게 “에이 그럼 아줌마라고 부를까”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으로 A씨는 6~7시간 동안 강박을 당하였다.
그리고 용변을 보고자 강박 해제를 요청했지만 풀어주지 않아 강박상태에서 용변을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 2010. 5.)

K씨는 전화카드 사용문제로 C보호사와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C보호사가 K씨를 넘어뜨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갈비뼈 4곳이 금이 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어 2명의 보호사가 더 와서 진정인을 보호실에 가두고 묶어 놓은 다음 3시간이나 방치했다. (사건번호 08존인274)

■ 질문

- 1) 위 사례와 같이 강박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강박 중 자유롭게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소변기)을 받아서 해결을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 병동 내 환자간, 또는 직원과 환자간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박 조치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격리 · 강박 기준 강화²⁴⁾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 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와 같이「정신보

24)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p.142.

건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일정정도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제한에 있어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와 비례의 원칙(제37조 제2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의 경우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치료 목적의 격리·강박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요건 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제46조에서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고, 신체적 제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격리 및 강박 지침’(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별도의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부당한 격리 및 강박에 관한 벌칙 규정 역시 격리 및 강박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시행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시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격리 및 강박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격리 및 강박에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 및 검토 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격리 및 강박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정신보건법」은 격리, 강박을 최후의 수단으로써 최소한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은 오히려 병실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격리, 강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모법의 적용기준보다 광범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주체와 관련하여서도 모법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로 격리, 강박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은 당직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격리 및 강박 지침’은 「정신보건법」의 적용원칙 및 기준을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체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요건 아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하므로 격리 및 강박에 관한 사항을 지침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설된 시행령에는 격리·강박의 구체적 적용 범위, 즉시설명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환자의 상태 확인에 대한 시한 설정, 허용 가능한 시간, 격리 및 강박 절차, 방법, 기록 의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격리 및 강박의 적법여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7

작업치료

■ 사례

L씨 등은 매주 일요일, 목요일 저녁시간에 남자 환자들을 목욕 시켰다. 한번에 10여명씩 목욕을 시켰으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옷에 이물질이 묻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실에서 이를 닦아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또한 화장실 청소, 식당청소 대걸레질, 행주질도 환자들이 번갈아 수행하였다.

작업치료에 대한 주치의 의견, 환자의 동의 및 작업일지 작성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수는 목욕을 시키는 알콜 의존증 환자 2명에게만 월 5만원이 지급되었다. (사건번호 08진인 3629)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K씨는 낮병원에 의뢰되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참석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작업재활에 대한 욕구가 생겨 작업재활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병원내 스넵바에서 매일 4시간씩 작업요법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 12만원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 본인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 계산, 대인관계 등에서 높은 향상을 보여 주었다. (○○병원 작업치료 사례)

■ 질문

- 1) 위 사례와 같은 작업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위 사례처럼 작업치료 활동으로 월 5만원, 월 12만원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 작업치료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작업치료 규정 강화²⁵⁾

'작업치료'²⁶⁾는 정신장애인의 저하된 기능 회복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한 정신과 치료의 방법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지침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참여 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계획 등과 같은 치료 계획 및 프로그램이 작업치료에

25)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p.144.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⁷⁾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료진의 상담 및 평가가 부재하거나 하루 종일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작업치료와 관련된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동기가 있어야 하며, 둘째, 치료 또는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셋째,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 져야 하며, 넷째, 직업재활훈련실 등의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치료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작업을 시킨 경우 단순히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과 결과, 실시일시 등만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재되어야 할 작업치료계획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하고 있다.

또한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작업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단순 작업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에 치료목적, 대상자의 기능평가,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계획 등과 같은 치료 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진료기록부나 작업일지에 기재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작업장 명, 대상자의 적합성 및 작업내용, 작업조건, 기대효과, 대상자 평가표 등을 포함한 작업치료 관련 별지서식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법」의 취지를 살려 작업치료를 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재활훈련실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치료적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치료는 정신질환자의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치료목적으로 볼 수 없는 작업치료에 대해서는 노동을 강요한 것과 동일하게 벌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²⁸⁾

26) 작업치료란 넓은 의미로는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 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27)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정신보건법」이나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 강제력이 미비하다.

28) 「정신보건법」 제5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 사례

병실, 흡연실, 거실에 CCTV가 총 10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장실과 샤워실에는 CCTV가 없다. 또한 병실은 총 6개로 각 실마다 CCTV가 1대 설치되어 있다. (사건번호 08진인3538)

■ 질문

- 1) CCTV는 화재감시와 입원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2) CCTV는 어떠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3) CCTV 설치로 인한 입원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1조(권익보호)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에는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CCTV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한 목적은 입원환자의 자해·타해 방지 등 환자 안전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CCTV를 설치하여 항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격리실, 중증환자 입원실에 대한 CCTV 설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격리실이나 중증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이 아닌 환자들이 TV를 시청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병실 전체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감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보건법시행령」제20조는 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시설 내 CCTV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9

병동규칙

■ 사례

P병원에서는 A,B,C로 환자들을 분류하여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A, B등급은 담배, 전화, 면회, 외출이 가능하며, C등급은 담배, 전화, 면회, 외출 등을 제한하고 있다. (사건번호 : 06진인2621)

■ 질문

- 1) 위 사례처럼 병동규칙으로 환자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위 사례와 유사하게 청소규칙, 음식물 섭취 및 반입 등을 제한하는 병동규칙을 만들어 운영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동제한의 금지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즉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병동 규칙화하여 모든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입원환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사례

A간호사는 거실에서 차트를 보고 있는데 B입원자가 갑자기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욕을 하였다. 다행히 주변에 보호사와 간호사가 있어 B입원자를 바로 제지하여 더 큰 불상사는 없었으나 이날 이후로 B간호사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 (○○병원 사례)

정신분열병으로 입원한 A씨는 환청과 피해망상으로 입원 초기 정신과 약물투여 후 부작용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몸이 뻣뻣해지고 많이 가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A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아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원 상태로 만들어라' 고하자 간호사가 증상과 약물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나까지게 뭘 안다고 그 댄 소리하냐'며 삿대질하고 막 말을 하였다. 이후 담당의사의 설명도 통하지 않았고, A씨의 어머니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여 퇴원처리 되었다. (○○병원 사례)

■ 질문

- 1) 입원자 또는 보호자가 종사자를 폭언하거나 폭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2)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종사자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3)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신보건 종사자의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종사자들에게 행사한 폭력 경험²⁹⁾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195명에게 정신장애인이 종사자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한 경험유무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 언어폭력 75.5%, 신체폭력 51.6%, 성적폭력 31.6%로 나타났다.

반대로 종사자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경험유무에서는 언어폭력이 30.6%, 신체적 폭력 13.8%, 성적 폭력은 2.5%로 나타났다.

29) 김이영 외(2009), "정신장애인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욕구조사", p.68~69.

■ 정신의료기관 인력 기준 강화³⁰⁾

치료인력의 부족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환자를 통제나 감시의 대상으로 규정하기 쉽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력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환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치료는 불가능하며, 정신과 치료에 필수적인 상담진료와 대인 서비스도 어렵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에 관하여³¹⁾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입원환자 60인당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환자 13인당 간호사 1인, 입원환자 100인당 전문요원 1인 등의 의료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수가체계는 이러한 의료인력 준수 현황을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의 수를 OECD 30개국과 비교하여 보면³²⁾, 2001년 기준으로 아이슬랜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5명, 호주 14명, 미국 10.5명, 영국 11명, 프랑스 20명 등 전체 평균이 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을 기준으로 5명에 불과하다.³³⁾

또한 이를 의료인력 직종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200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인구 10만 명당 평균 정신보건간호사는 4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10.3명,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26명인데 반해 0.9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44명인데 반해 1.9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기준은 OECD 국가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선진국 기준으로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30)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p.145.

31) 「정신보건법」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2) WHO(2001), Atlas: Country Profiles On Mental Health Resources; WHO(2003), Investing in Mental Health; 김민석 외(2006),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개발 기초조사", 국립서울병원·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소, p.110.

33) 최근 OECD 비교통계가 없어 우리나라만 2008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여타 OECD국의 2001년 정신과의사 수가 국내 2008년 의사 수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신과 인력수준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진진정을 신청했는데 당일 오후 병원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사전 통지도 없이 퇴원하라고 하면서, 앰블런스에 태워 G병원으로 전원시켜 버렸다. H병원에 B씨가 입원될 당시 보호자와 H병원간에 B씨가 H병원에서 치료에 비협조적이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병동환경을 훼손할 경우 퇴원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사건번호 08진인274)

■ 질문

- 1)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입원자를 강제퇴원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와 상의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위 사례처럼 입원 전에 보호자와 병원간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입원환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행동을 병동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하거나 그 요인으로 보아 환자를 퇴원 조치하는 것은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55조³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3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진정사건 결정례

□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09진인3092)

1. 진정요지

- (1) 환자들에게 청소, 빨래, 설거지를 시킴
- (2) 전화사용이 1일 1회로 제한되어 있음

2. 당사자 주장

(1)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청소 및 간식판리는 치료진의 개입이 전혀 없이 환자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입원 중 급성기를 지난 알코올 환자들이 본인들 스스로 청결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치료진의 개입을 거부하며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식은 규칙적인 작업 활동으로 향후 퇴원이 계획되어 있거나 일상기능 수행이 가능 하더라도 활동이 적은 환우들을 대상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치료진의 관리하에 수행하고 있어 일상기능 유지 및 퇴원 후 직업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는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 간호사와 ○○○ 사회복지사가 병동에 상주하면서 매 배식시간 관찰하였고, 매일 아침마다 주치의 보고 시간에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하며 직업재활 하는 환자들의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 매일 기록은 하지 않았으나 매월 개인 평가서는 작성하였다. 배식작업에 대한 대가로 월 3만원을 환자들의 개인 간식 장부에 입금 시켰다.

보호자의 요청과 주치의 면담 후 전화제한이 필요한 환자는 주치의 처방에 의해 제한하며, 그 외 환자에 한해서는 1일 1회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통화를 허용했으며, 정신과 권익을 위하여 원칙은 설정하고 있으나 유연하게 운영 하였다.

(3) 참고인

1) ○○○ (○○병원 간호사)

입원 후 첫 1주일간 전화사용이 제한되며 그 후에는 1일 1회 사용이 원칙이다. 전화사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식사시간과 투약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환자들은 방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방장이 아니며 간식도우미다. 각 방의 간식도우미와

[참고자료]

총간식도우미가 있다. 청소는 환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배식조 결정은 기존의 배식조가 후임을 결정하거나 총방장이 결정한다.

2) 000 (입원환자)

배식을 도우면서 병원으로부터 월 3만원을 받고 있다. 000 선정은 배식소 5명이 회의를 통하여 후임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병동의 간호사나 보호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배식조는 7층과 6층을 통합하여 밥 1명, 국 1명, 반찬 3명, 이렇게 5명이 있다. 격리실 밥과 당뇨식은 별도의 식판에 담겨 올라오며 나머지 일반식은 식당 아주머니 1명이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한꺼번에 가지고 올라간다. 올라온 식사는 6층의 집단치료실에서 배식조 5명이 6층과 7층을 통합하여 배식을 하며, 환자들은 각자의 병실에서 밥을 먹은 뒤 다시 6층의 집단치료실로 식판을 가지고 온다.

청소는 고용된 아주머니가 주 2회 화장실 청소를 한다. 나머지 청소는 6층의 4개방과 7층의 4개방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각 층의 청소를 1주일씩 하고 있다. 공동구역 이외의 각 병실의 청소는 해당 병실에 입실해 있는 환자들이 알아서 청소를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방장이 청소관리를 하게 된다.

현재 703호의 방장을 맡고 있으며, 방장은 별도의 수당이 없다. 환자들 중에서 통솔력이 있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사람 중에서 환자들이 방장을 선출한다.

전화시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용이 가능하다. 카드 공중전화이며 처음 입원하면 2주간 전화가 제한된다.

3) 000 (입원환자)

배식을 돕고 있으며, 월 3만원 정도 받음. 배식할 때 식당 아주머니 1명이 올라오며 식당 아주머니는 젓가락, 손가락, 식판, 그리고 음식물 잔반을 모아서 가지고 내려간다.

현재 7층 703호에 입원해 있으며 방장은 000이다. 방장의 역할은 각 방의 간식신청을 받고 신청 받은 내역을 총방장에게 전달한다. 총방장은 간식 신청서를 취합하여 간호사실에 제출하면 원무과를 통하여 간식이 올라온다. 올라온 간식은 6층의 면담실에서 총방장이 각 방장들에게 배분하고, 각 방장은 병실로 돌아와 환자들이 신청한 간식을 개별로 나눠준다.

청소는 4개방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1주일씩 한다. 청소구역은 복도와 휴게실(탁구대, 재떨이가 있으며 환자 사이에서는 동신이라고 부른다)을 청소한다. 욕실 청소도 하기는 하나 별도의 시간을 내서 청소하는 것은 아니고 순번되는 방의 환자들이 목욕할 때 청소하는 성도이며 화장실은 청소아주머니가 주 2회 청소를 하나 아주머니가 청소하지 않은 날에는 순번되는 방의 환자들이 대충 청소하는 정도이다. 각 병실의 청소는 기상 후와 점심 후 하루 2회 병실의 모든 환자들이 청소를 하며, 청소가 싫다고 해보진 않았다.

4) ○○○ (입원환자)

배식을 돕고 있으며, 희망하는 환자 중에서 기존의 배식조가 후임을 선정한다. 그리고 누가 선정되었는지를 간호사실에 알려준다.

현재 705호의 방장을 맡고 있음. 방장의 역할은 병실 환자들의 간식 신청서를 받아 총방장에게 전달하면 총방장이 취합하여 간호사실에 주고 간식이 올라오면 총방장이 6층 면담실에서 각 방장에게 신청한 간식을 배분함. 각 방장은 병실에 돌아와 환자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준다.

청소는 1주일씩 순번제로 한다. 청소 순번이 되는 방의 환자들은 복도 휴게실(탁구대와 재떨이 등이 있는 동선)의 청소를 한다. 화장실은 청소 아주머니가 주 2회 청소를 하나 나머지 날에는 청소 순번이 되는 방의 환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

전화는 1주 1회 사용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전화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5) ○○○ (입원환자)

배식을 돕고 있으며, 배식할 사람이 없다면 배식조들이 본인에게 부탁하여 배식을 돕게 되었다.

6층도 7층과 마찬가지로 4개방이 1주일씩 순번제로 병동 청소를 하고 있다. 6층은 샤워실과 휴게실이 없으므로 간식을 나누어 주는 면담실과 화장실, 복도를 청소한다. 배식을 하는 집단치료실은 6층의 4개방과 7층의 4개방이 하루씩 청소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꼴로 청소 순번이 돌아온다.

605호실의 방장을 맡고 있다. 방장의 역할은 병실 환자들의 간식 신청을 받아 총방장에게 전달하며 간식이 올라오면 총방장으로부터 간식을 배분받아 병실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방장은 병실 환자들이 모여서 선정을 한다. 방장회의는 한 달에 한번정도 하고 있으며 방장들만 모일 때도 있고 간호사와 보호사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방장회의의 내용은 환자들의 애로사항을 병원 측에 전달하거나, 병원 측이 환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회의 사항이다. 총방장은 방장들의 회의에서 선출된다.

전화사용은 1일 1회 사용 가능하다.

6) ○○○ (입원환자)

총방장인 ○○○에게 배식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여 배식을 하게 되었다. 환자가 배식에 참여할지 여부는 간호사나 의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배식은 6층과 7층을 통합하여 6층의 집단치료실에서 한다. 배식조가 밥, 국, 반찬을 배식하고, 찜가리, 순가리, 식판, 잔밥 수가는 식당 아주머니가 한다. 배식을 하는 집단치료실은 6층과 7층의 8개 방이 매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담당한다. 청소가 순번제로 돌아가므로 청소하기 싫다고 하기 어렵다. 공동체 생활에서 혼자만 청소를 안 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7층의 청소는 4개방이 1주일씩 순번제로 청소를 한다. 청소구역은 동산 복도를 주로 한다. 화장실은 주2회 청소아주머니가 하는데 나머지 날에 청소 순번이 되는 방의 환자들이 청소를 하게 된다.

전화사용은 하루에 1통화만 허용된다. 아주 급한 경우에만 2통화가 허용된다. 전화사용 시간은 식사와 투약시간을 제외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7) 000 (입원환자)

702호의 방장이며 더불어 6층과 7층의 총방장이다. 총방장은 방장들이 모여서 선출하며, 별도의 수당은 없다. 방장회의는 필요할 때 총방장이 소집할 때도 있고, 간호사가 소집할 때도 있다. 환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논하거나 병원 측의 전달사항을 듣고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총방장의 평소 역할은 간식의 신청과 배분이다. 간식은 2일에 1번씩 신청하게 되는데 각 방장이 간식종이를 써내면 총방장이 취합하여 간호실에 제출한다. 병원매점에서 간식이 올라오면 6층 면담실에서 각 방장에게 배분한다.

청소는 4개방이 일주일씩 순번제로 하며, 전화사용은 1일 1회 가능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식사, 투약시간을 제외하고 전화사용이 가능하다. 입원 후 첫 2주간은 전화사용을 못하게 한다.

3. 인정사실

(1) 진정이지 1)의 배식, 청소, 간식배분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각 병실에는 환자들이 선출한 방장이 있으며 방장 중에서 총방장이 선출된다. 방장과 총방장의 역할은 간식주문과 배분이며 각 병실의 방장이 환자들로부터 간식주문을 받고 이를 총방장에게 제출하면 총방장은 취합하여 간호사실에 전달한다. 병원 매점에서 주문한 간식이 올라오면 총방장은 다시 각 방장에게 간식을 배분하고, 각 방장은 병실로 돌아가 환자들이 주문한 간식을 나누어 준다.

병동내의 청소는 피진정인이 고용한 청소구역 직원이 주 2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청소하지 않은 날의 화장실 청소와 피진정인이 청소를 하지 않는 복도, 휴게실, 욕실, 집단치료실(배식실로 이용) 등의 공동구역은 환자들이 각 방별로 순번을 정하여 청소를 하고 있고, 공동구역 외의 각 병실의 청소는 해당 병실에 입실해 있는 환자들이 방장의 관리하에 청소를 하고 있다.

배식은 피진정인이 고용한 식당 직원 1명이 밥과 반찬을 가지고 6층의 집단치료실로 가지고 올리면, 배식을 담당하는 환자 5명이 밥과 반찬을 식판에 배식하며, 환자들은 각자의 병실에서 밥을 먹은 뒤 다시 6층의 집단치료실로 식판을 가지고 와서 잔반을 처리한다.

피진정인은 배식작업이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치료진의 관리하에 수행되고 있다. 면서 배식에 참여하였던 환자들의 재활치료 동의서, 원내작업치료 계획서, 원내 작업치료

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식에 직접 참여하였던 환자와 병동 간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배식조의 결정은 기존의 배식조가 후임을 결정하거나 총방장이 결정하고 간호사실에 통보한다고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환자들 중에서 누가 배식에 참여할지는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치료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들 사이에서 필요에 의하여 결정된 후 치료진에게 통보되면, 사후에 재활치료동의서, 작업치료 평가서 등이 작성되고 있다. 배식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피진정인은 월 3만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 9월 이후부터는 자율배식으로 전환하였다.

(2) 진정요지 2)의 전화사용 제한에 대하여

피진정인과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전화사용은 입원 후 첫 2주간 제한되며 그 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식사, 투약시간을 제외하고 1일 1회 전화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병동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신과 전문의의 전화제한 사유와 기간을 개별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는 않았다. 보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주 1회로 전화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4. 판 단

(1) 진정요지 1)의 배식, 청소, 간식배분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를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를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내에서의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 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식, 간식배분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주 2회 정도의 화장실 청소 외에 병동 청소, 배식관리, 간식 주문취합 및 배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병동 생활에 필수적인 이러한 기본 업무를 피진정인이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입원환자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방장을 선출하여 간식 주문과 배분을 하고 있으며, 청소 구역과 순번을 정하며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배식담당을 정하여 공평한 식사 배분을 해결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환자들 스스로 청결을 위해서 치료진의 개입을 거부하고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피진정인이 충분한 정도의 청소를 시행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면, 환자들이 스스로 청소구역과 순번을 정하여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피진정인이 기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른 환자들이 교육지적으로 순수한 자율 활동으로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를 환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에 해당한다.

간식 주문과 배분의 경우에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병원 매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므로 폐쇄병동의 운영자인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식 주문과 배분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환자들 스스로 방장과 총방장을 선출하고 간식주문과 배분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순수한 자율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배식관리의 경우 피진정인은 신체가 불편한 환자를 위하여 개인별 식판에 음식을 담아 제공하거나, 자율배식을 하더라도 배식량의 조절을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음으로서 환자들이 스스로 배식을 담당할 사람을 선출하고 배식관리와 잔반처리를 하였던 것은, 비록 피진정인이 배식을 돕는 환자들의 재활동역서, 작업치료일지 및 평가서를 일부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와 재활목적으로 사전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여 결정한 것이 아닌 환자들 사이에서 필요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피진정인이 통보받고 작업치료 관련 서식에 내용을 기록한 것일 뿐, 실제로 작업치료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배식, 청소, 간식주문 및 배분 등의 업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율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이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2)의 전화사용 제한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과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벌칙) 제4호는 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입원하면 첫 2주 동안은 전화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그 후에는 1일 1회의 전화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병동규칙을 운영하고 있고 보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주 1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기도 하나, 치료목적에 의한 정신과 전문의의 전화사용 제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배식 청소, 간식 주문 및 배분 등의 업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의 동의를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발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고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치료목적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의 개별지시와 진료기록부 없이 병동 규칙을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주문내용

- 1) 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청소와 배식, 간식의 주문과 배분 등은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입원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것을 권고한다.
- 2)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목적에 위한 전화제한 지시 및 진료기록부 기록 없이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를 권고한다.

[참고자료]

② 부당한 입원 및 계속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06진인2537/06진인2441 병합)

1. 진정요지

- 1) 2006. 4. 14. 모친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으로 강제입원되었다.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되었기 때문에 퇴원을 바란다.
- 2) 6개월의 입원기간이 지난 후 입원을 연장하려면 보호의무자인 모친의 동기가 필요한데 모친이 치매로 입원하여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입원기간을 연장시켰다.

2. 당사자 주장요지

(1) 진정인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주장

- 1) 진정인 ○○○은 모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06. 4. 14. 입원되었다(증상: 모친에게 돈 요구, 미국과 국가기밀에 대한 망상 등). 이전에도 피해망상, 난폭행동, 투약거부와 칼 소지 등으로 6차례 입원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있기 전에도 환자의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퇴원에 대한 요구가 잦은 상태였다.
- 2) 보호자들은 환자가 현재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전에도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했다가 투약 중지 증상 악화 등을 자주 경험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2006. 9. 경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다른 보호자인 누나가 동의하고 현재 입원이 연장된 상태이다. 진정인에 대한 입원 연장은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다.
- 3)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한 것과 관련
 - 가) 민법상 부양의무자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계 존·비속이라는 언급이 없어 직계혈족인 형제자매도 보호의무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 나) 진정인의 어머니는 진정인의 병적중세 때문에 입원을 의뢰하셨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본 병원에 내원할 수 없고 실질적인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행할 여건이 안 되어 부득이하게 누나인 ○○○씨가 보호의무자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보호의무자 요건(직계혈족)을 충족하기에 입원동의를 받게 된 것이다. 정신보건법령을 잘못 알고 있어서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4) 퇴원심사청구 관련

입원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망상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증상이 잔존한 상태에서는 환자의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의 문제가 존재하는 바, 당시 퇴원에 대한 요구는 환자의 증상이나 병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으로 퇴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여겼으며, 보호자인 가족들도 환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밟지 않았다.

- 5) 진정인은 2007. 1. 13. 퇴원했는데 보호자와 통화하여 퇴원기한을 정해 드렸으나 보호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지 않았다. 진정인이 2007. 1. 13. 퇴원에정임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고 퇴원 당일 전화통보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3. 사실의 인정 및 판단

(1)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서, 입원 및 계속입원관련 자료,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바, 진정인은 ○○병원에 총회 입원 2002. 8. 이전에는 어머니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했고, 그 이후에는 형(○○○)과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했다. 2006. 4. 14. 입원 시 전문의 소견: 피해망상, 행동장애)에는 누나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2006. 9. 20. ○○○의 동의를 얻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 ○○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입원 소치되었고, 2007. 1. 13. 퇴원하였다. 입원 후 지속적으로 퇴원요구를 했으나 퇴원심사청구절차를 밟은 적은 없다.

(2) 판단

- 1) 현행「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시장·군수·구청장(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는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민법」제974조), 미성년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민법」제928조 내지 제930조)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2) 따라서 피진정인은「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 즉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족(누나)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을 입원 및 계속입원 조치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3) 계속입원과 관련, ○○광역시장은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가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청구를 받아들여 심의·의결을 거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바, 심사청구에서 결과통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참고자료]

것이라 판단된다.

- 4) 한편, 「정신보건법」 제29조에 규정된 퇴원 및 처우개선심사청구는 입원중인 자 및 그 보호 의무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는 청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와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입원 중인 환자와의 관계,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정신질환자의 상태에 대한 내용은 청구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인에게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고 청구서 작성을 위한 편의를 제공했어야 함이 마땅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6조에서 규정한 의무, 즉 정신보건법상의 권리 및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5) 진정인은 2007. 1. 13. 퇴원한 바, 진정요지 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1) 진정요지 나.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 1)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 (가) 환자 입원 및 계속입원 시 정신보건법령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입원환자들이 퇴원 및 처우개선심사청구 등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나) 입원 및 계속입원 관련 규정과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입원 환자의 권리에 관하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감독기관인 ○○광역시장에게
 - (가) 정신보건법상 정당한 보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계속입원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시설을 포함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나)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 및 계속입원 조치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주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 진정요지 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제3장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 진정권리 및 면전진정 절차 등 |
| 진정함 운용방법 | 인신보호법 |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1 배경

정신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취업이나 보험가입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정신장애의 특성상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와 보호 정책이 당사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병원이나 시설을 통한 격리에 치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비자의 입원률은 전체 입원환자의 86%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률이 53%를 상회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자의 입원율과 장기 입원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원 후 즉시 재입원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및 최소한의 자기결정권 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위원회에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진정내용은 비자의입원, 퇴원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가혹행위, 외부와의 소통권제한 등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91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이 공표된 이후, 격리와 시설보호 위주의 정신보건 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용자와 가족중심의 치료, 예방과 재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회복과 사회복귀 중심의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국의 정신보건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및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관계법령, 정신장애인 가족의 생활 실태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각국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정신보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주요내용

국가보고서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국가보고서 개요로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작성목적, 기대효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2부는 정신장애인 인권관련 국제동향 및 해외사례로 구성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 및 원칙을 살펴보고, 정신보건과 관련된 국제동향과 해외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소개하였다. 제3부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구성하였는데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입·퇴원 과정의 적정절차 준수, 기본권 보장 및 최소제한 원칙,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문화와 최적의 치료환경 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5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하였다. 제4부는 국가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내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부는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국가보고서 제4부에서 다룬 정책방향 및 핵심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자의 입원률은 13.8%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행화되어 있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자의입원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정신보건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비자의 입원률은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입원기준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대상 환자에 대한 입원요건을 강화하며 계속입원심사기준을 개정·단축하는 등 입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입원한 환자 중에는 입원 후 방치되어 입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공공이송체계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로부터 방치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거

나 질환이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인권을 보호해 줄 공공후견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는 자기결정권 및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치료과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내에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가 치료과정 및 환경, 권리 등에 대해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와 자유, 통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당연히 정신장애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신보건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 강화, 면회·통신·방문 등 외부소통권 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 격리·강박 기준 엄격화 등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이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제한만을 받는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적의 치료는 적절한 의료 인력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선진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급여 수가를 실질화하여 치료환경 및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차등수가제 평가항목에 시설기준 및 지역사회 연계율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보호 중심의 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역할구분이 불명확하여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치료가 완료된 정신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 생활시설과 재활시설’로 재정립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폐쇄적 시설 구조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쉽게 침해되며 침해 후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가족부, 관할 보건소 등이 연계하여 부당한 입·퇴원 반복 및 횡수용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미인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모든 정신장애인이 법이 허용한 시설 내에서 최적의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면 사회에 방치되거나 재입원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퇴원환자와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계체계의 강화,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정신보건 복지에산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 가족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간 연계강화를 통해 퇴원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및 법인화하고 그에 준하여 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퇴원환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가·상담·치료연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 이므로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화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시설 이용료의 부담을 줄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정신보건복지 예산 및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예산기준 고지 및 균형발전예산 지원을 통하여 지역별 정신보건서비스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의 경우 주위의 차별과 편견 및 경제적인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와 자조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고, 이러한 차별은 다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정신분열증' 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병명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명하고,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정신미약자' 와 같이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은 각종 차별적 법령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오히려 편견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대중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와 홍보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어 시정 조치를 권고 받았던 피진정기관이나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한해서만 전문교육기관으

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일부를 정신장애인 관련 사건의 담당자로 지정하여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진정권리 및 면전진정 절차 등

아무리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는 입원하기 전에 입원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정보제공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긴급한 환자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가능한 빨리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1 진정 절차에 대한 고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³⁵⁾에 의거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최초로 수용되는 경우 수용자에게 “①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 증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④ 우편, 전화, 팩스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2 면전진정 절차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작성된 면전진정 신청서를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면전접수 확인서”를 시설로 송부하며 면전접수 확인서를 받은 시설 직원은 즉시 시설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후 위원회는 직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한다.

35)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3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한 경우에는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모든 경우의 입원 시에 언제든지 퇴원을 청구할 수 있고,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가 되어야 한다.³⁶⁾

또한 입원 및 입원연장 결정 시 입원 또는 입원연장의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³⁷⁾

36)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37) 정신보건법 제24조제5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진정함 운용방법

1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7조제1항38)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진정함의 규격 및 재질

진정함의 규격과 견본 사진



- 진정함의 재질은 내용물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3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 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진정함 설치 장소 및 표시

- 진정함은 시설수용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접근이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진정함 표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여 다른 용도의 민원함 또는 건의함과 구별해 운용하여야 한다.

4 진정 안내문 “〈붙임 1(p.97.)〉 자료 참고”

- 설치된 진정함의 상단 또는 좌우에는 진정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설수용자가 진정함 설치 취지와 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진정 안내문의 내용은 시설수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씨 크기로 작성해 부착하여야 한다.

5 시건장치 및 관리

- 진정함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그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매일 일정시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진정용지 · 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

- 진정함이 설치된 곳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서나 일반용지 및 필기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진정서를 봉합하는 봉투는 수신지란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소가 기재된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7 진정함 설치 및 운용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시설장이 진정함 설치에 대한 의무를 전혀 모르고 있다.

2) 진정함에 ‘국가인권위원회’ 라고 별도 표기가 안 된 경우

- 시설 자체 건의함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3)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경우

- 수용자 인원 및 건물 동수에 비해 설치된 진정함은 1개 밖에 없다.

4) 진정함은 있으나 구체적인 안내가 없는 경우

- 안내문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이라고만 되어 있어 수용자들이 진정함의 용도를 모를 수 있다.

5) 진정함이 직원 근무대 옆에 있어서 이용을 꺼리는 경우

- 진정함이 간호사실 옆에 설치되어, 수용자가 진정함 접근을 꺼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6) 진정서 용지, 봉합용 봉투, 필기도구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백지만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조차도 비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
- 봉합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진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기 어렵다.
- 봉합용 봉투 대부분이 수신자인 국가인권위원회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일부 시설은 필기구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을 제한받고 있다.

8 진정함 설치 및 운용 사례

1) 부적절한 사례



사진 1



사진 2

- 사진 1)과 2)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건의함(소원수리함, 인권함)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수용자들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문이 게시되지 않아, 진정방법 및 절차에 대해 수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으며, 아울러 진정서나 필기구 등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진 3



사진 4

- 사진 3)은 인권위가 제작·배포한 진정함을 설치하였으나, 알림을 통하여 필기구 사용시간(매일 오후 2시30분에서 4시 30분)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을 제한하고 있었다.
- 사진 4)는 전화와 진정함을 간호사실 바로 앞에 설치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진정함 접근을 꺼리게 하는 경우이다.

2) 모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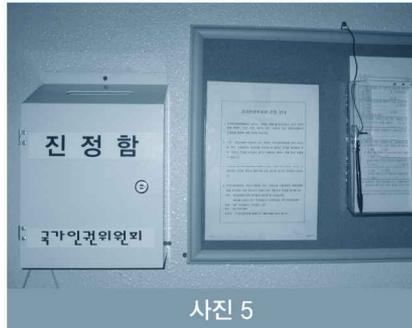


사진 5



사진 6

- 사진 5)와 6)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규격에 맞게 진정함을 제하였으며, 진정서와 국가인권위 주소가 적힌 봉투, 필기도구, 진정 안내문을 함께 비치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특히 사진 6)은 수용자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출입구 바로 옆에 설치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진정함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9 진정함 운용과 관련 진정사례

■ 사례

진정함을 관리·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진정함에 들어 있는 내용물들을 처리·관리하는 방법을 몰라 전부 개인 파일에 찢해 두고, 진정함 이용 및 방법 등을 고지한 안내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K씨는 “누나를 찾아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진정함에 넣었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진정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았다. (사건번호 : 08진인11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제4항³⁹⁾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는 매일 진정서 또는 서

39)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④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⁴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7⁴¹⁾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진정서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지라도 이에 대한 처리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진정함에 제출된 모든 문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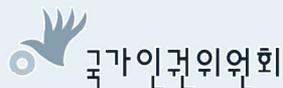
4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41) 제57조 (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임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 및 치료감호소 등의 구금시설과 장애인, 노인 아동, 외국인 등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을 받습니다.
2.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 시설에서는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 증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가 제한된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관을 직접 보내거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우편 : 인권침해에 대해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7층 인권상담센터
 - 전화 :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31
 - 팩스 : 02) 2125-9811
 - 인터넷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4

인신보호법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고지처럼 최초 입원 시 인신보호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정신보건시설 내에 인신보호법 안내서를 비치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인신보호제도 안내⁴²⁾

1) 인신보호제도 개요

-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보호시설,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한다.
-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한다.

42) 보건복지부, “2010 정신보건사업 안내”, p.443.

* 대법원 법원행정처(형사심의관실)와 보건복지가족부(정신건강정책과)가 합동으로 작성하여 '09년 7월 전국 정신의료기관 등에 배포한 자료임.

* 인신보호제도 안내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상단우측] 전자민원센터 - [하단우측] 형사, '인식보호제도의 개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제청구의 관할법원 방식

-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다.
- 구체청구는 ① 구체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 피수용자의 성명 ④ 청구의 요지 ⑤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 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붙임 2 - 구체청구서(p.102.)〉 참고”

3)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용자의 의무

가. 답변서 제출 의무

- 수용자는 구제청구서부본을 받게 되면 심문기일 전까지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수용의 사유,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시기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 심문기일 출석 의무

-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 법원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소환한 경우에는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법원으로 호송하여 당일의 심문의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한다.

- 피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밝혀야 한다.

5) 임시해제와 신병보호 결정

가. 임시해제

- 구제청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임시해제된 후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해제결정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하고 피수용자를 구인할 수 있다.

나. 신병보호

- 법원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는 위와 같은 법원의 신병보호조치에 대하여 그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6) 재판비용의 부담

- 구제청구자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 참고인의 출석비용,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피수용자를 임시 수용시설에 이송하여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그 대상이 된다.
- 구제청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용을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법원은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2 인신보호제도 첫 구제사례 기사

경향신문

2009년 07월 24일 금요일
011면 사회

‘인신보호제도’ 첫 구제사례 나왔다

정신병원 갇힌 40대 의사 강제수용 벗어나

인신보호제도가 도입된 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40대 의사가 강제 수용을 면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던 성형외과 의사 ㄴ씨(40)가 낸 인신보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인신보호제도는 정신요양원 등 각종 보호시설 등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했을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ㄴ씨는 2007년부터 수면 마취제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아내 등의 동의에 따라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ㄴ씨는 “투약한 약품이 항정신성 의약품이 아니어서 정신이상이나 환각 증세를 유발하지 않고,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며 “아내와 재산분할 다툼이 있는데 강제 수용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인신보호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ㄴ씨가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수용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홍두기자

[붙임 2]

구제 청구서

구제 청구자	성 명 : 피수용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수용자	성명(또는 기관명) : (기관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피수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청구 요지 및 수용이 위법한 사유 (필요하면 별지 사용)	
수용 장소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0	
구제 청구자 인	
○○법원 귀중	

● 부록

| 격리 및 강박지침 | 작업치료 지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 |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

격리 및 강박지침

1 정의

- 1) 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 2)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2 적용기준

- 1)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격리
-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또는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3 적용시의 원칙

-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 2) 격리 또는 강박 시행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다.

-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 4)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 5) 치료사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 6)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 7)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 8)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9)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 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 10)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뒤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인하고 관찰한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말까지 격리·강박지침을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구분	적요
보호일시 (강박/격리)	
병명	
지시자 성명 및 서명	
의사 성명 및 서명	
참여자 성명 및 서명	
격리(강박) 당시 증상	
격리(강박) 방법	
격리(강박)시행 세부내용	

2

작업치료지침

1 정의 및 목적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 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2 원내외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과정

가. 1단계: 기초적인 작업치료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욕구를 자극할 만한 즐거운 작업수행,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수행을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작업동기 부여

나. 2단계: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작업치료를 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신체적·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여러가지 집단활동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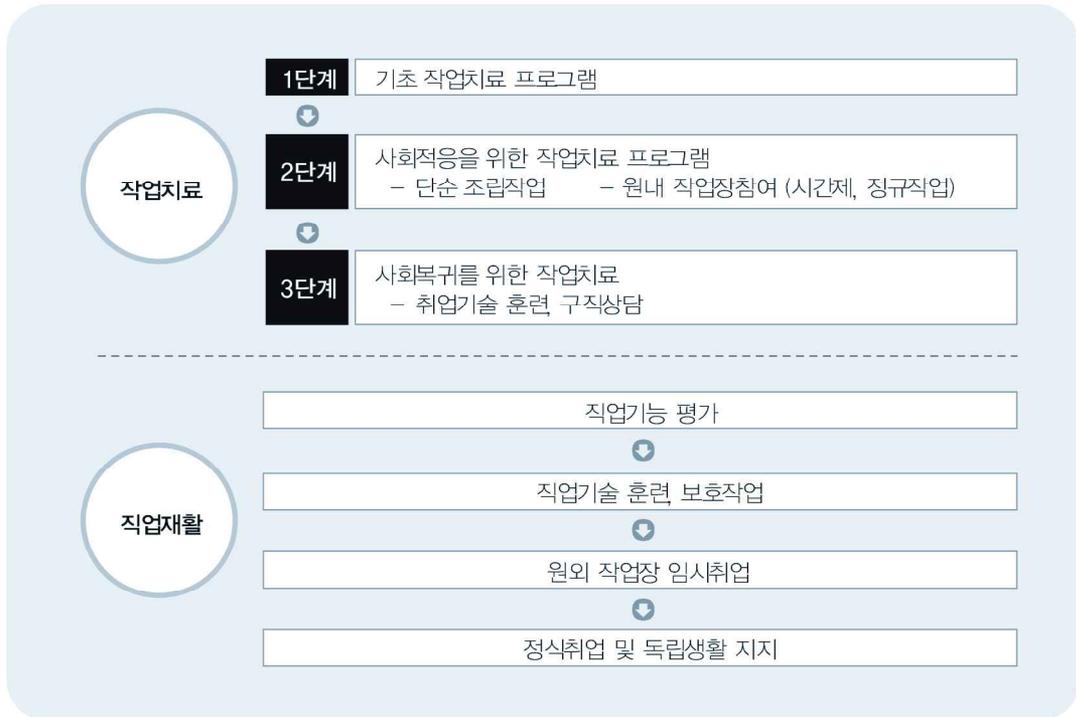
다. 3단계: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하여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평가하고 간단한 장비조립, 수리 등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훈련을 시행하며,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취업상담 실시

라. 4단계: 직업재활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있어 가장 필요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활동 및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원내 및 원외에서 시행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을 말하며, 직업재활에는 직업기술 및 구직 기술훈련, 보호작업, 임시취업, 지지고용, 개별취업 등 일련의 훈련 및 지도 포함



3 원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적용기준

가. 적용원칙

- ①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②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혹은 치료진)의 치료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③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 작업치료 지침 및 적용기준
- ㉡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 ㉢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진의 검토회의
- ㉣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 ㉤ 작업치료 일지 및 임금대장
- ㉥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나. 적용(참여)기준

- ① 증상이 안정되어 프로그램 참여 및 작업수행이 가능한 환자
- ② 동의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
- ③ 작업치료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 배제기준(사전)

- ① 작업에 지장을 주는 신체질환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환자
- ② 기질성 뇌증후군, 지적장애인 등의 증상으로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
- ③ 간질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

라. 부적기준

- ① 작업도중 발견된 신체질환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전문의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 ② 사고 또는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③ 다른 환자와 대인관계로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
- ④ 정해진 업무 또는 의무를 빈번히 기피하는 경우
- ⑤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 ⑥ 관리자에 대한 공격성향과 저항이 심한 경우
- ⑦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경우

마. 치료적 접근방법

- ① 약물치료: 주치의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여야 하고, 투약을 거부할 경우 작업치료를 유보할 수 있다.
- ② 개인정신치료: 주치의는 병동의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면담 및 개인 정신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정신사회재활치료: 병동내 집단치료를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시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작업장내 지도감독: 원내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 관리자를 참석시키고, 작업시간동안 생기는 문제나 환자의 작업상황을 주치의 및 병동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원내 작업치료의 종류

① 시간제(비숙련) 작업

- ㉞ 직원의 지도하에 작업의 적응을 위한 단순작업을 시행한다.
- ㉟ 작업시간은 환자의 기능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② 정규(숙련) 작업

정규작업자는 원내의 작업치료 장소에 배정되어 작업기술을 배양하고, 사회적 기술 및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능향상시에 지속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퇴원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작업자의 시간관리

① 시간제 작업자

작업장 이동시에는 작업장 관리자가 직접 관리한다.

② 정규작업자

- ㉞ 작업자의 업무 시간의 시간관리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 ㉟ 출/퇴근은 시간표에 의하여 관리한다.(계절별로 시간 재조정)
- ㊱ 모든 작업자는 일요일·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작업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 ㊲ 정규 출·퇴근시간(9:00-17:00) 이외의 관리는 해당병동 관리자가 직접 인솔하도록 한다.

아. 작업치료 참여자의 임금

- ①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 ② 작업치료시 환자의 작업에 대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임금은 작업의 종류, 작업강도, 숙련도, 작업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작업치료자의 지도감독 비용, 작업치료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공제하고,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지급되어야 한다.
- ③ 모든 작업치료에 의한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한다.
- ④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를 수행한 근무시간, 일수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정규작업자는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임금을 일당제로 책정하여 지급하며 정기적인 임금조정을 실시한다.
- ⑥ 비정규 작업자는 업무량과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자. 작업장 관리자

- ① 작업장 관리자는 년 2회 정신장애인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 ② 작업장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월 1회 평가한다.(작업장 관리표 참조)

[진정서 뒷면]

6. 첨부서류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엿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진정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input type="checkbox"/>			
긴급구제조치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20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중) 70g/m²)

원내 작업치료 평가서

- 환자 이름 : _____
- 일시 : _____
- 평가자 이름 : _____
- 작업장 : _____
- 최근 1달 동안의 작업자 상태에 대하여 해당하는 문항에 ○표 하시오.

구분	문항	평가
증상	1. 이유없이 혼자 웃거나 혼잣말을 하는 횟수가 늘었다.	
	2.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	
	3.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공격적이다.	
대인관계	4. 동료와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	
	5.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해 보인다.	
	6. 이성과 너무 가까이 보인다.	
작업수행	7. 시간 내 자리를 자주 비운다.	
	8. 작업시간 내 퇴원에 대한 이야기가 증가하였다.	
	9. 작업 중 정해진 규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출·퇴근, 휴식시간)	
	10. 이전에 비해 작업능력이 떨어진다.	
기타사항		
총평가	귀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작업유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2차년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부교재

2010년 6월 인쇄

2010년 6월 발행

발행인 :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100-842)
대표전화 : 02) 2125-9700 인권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1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교육 센터 : <http://edu.humanrights.go.kr>

디자인·제작 사회복지법인 해든 (T.02-868-6854)



2차년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 권 교 육 부 교 재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100-842)
대표전화 : 02) 2125-9700 인권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1
팩스 : 02) 2125-9888
인권교육 센터 : <http://edu.humanrights.go.kr>

